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아 동 권 리 위 원 회

결 정

사 건 21진정0672300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과도한 원거리
학교 전학 명령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

주 문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업무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는 ○○광역시○○○교육지원청(이하 “피진정기관”이라 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로부터 강제 전학 결정을 받았는데,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단지 가해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에 배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피해자에 대한 전학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사안조사를 하고, 심의를 요청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피진정기관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한 후, 관할 교육장인 피진정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피해자의 생활권은 A, B, C, D, E, F지역 뿐만 아니라 G, H지역 등 그 반경이 매우 넓다. 또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비행을 일으킨 바 있어 강제전학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다. 따라서 피해자를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행위는 피해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러한 가해학생에 대한 원거리 학교 배정은 피진정기관 「2021 중학교 전입학 (재)취학 및 편입학 업무처리 지침」(이하 “전학업무 처리지침”이라 한다)의 강제전학 학생 배정 기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 조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즉 위 규정에 따라, 재적학교(○○중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학교군 또는 타 학교군 소재 중학교와 이격된 학교 중에서 분산 배정하되, 학생이나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에 의한 학교장 추천 전학을 보낸 경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를 원거리 학교에 배정한 것은 가해행위에 의한 신체적 고통은 물론, 매우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피해자의 영향권으로부터 차단하여 조속한 치유를 돕는 한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보복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피해자도 새로운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취지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피해자의 물리적인 통학 시간보다는 학교 내에서 직접 교육받는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중학교 학교장은 장학사 출신으로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지녔고, 피해자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분이기 때문에 ○○중학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배정한 것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 및 피해자 대면조사 및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피진정인 서면진술서, 전학업무 처리지침, 학폭위 조치결정서, ○○중학교 담당장학사의견서, ○○중학교 담당장학사 의견서, ○○중학교 학교폭력 사안 접수보고 문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광역시 ○○○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2021. ○. 동급생 ○○○으로부터 5,000원을 빼앗은 이후, 2021. ○.까지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학교 주차장, 복도, 운동장 등에서 수차례 걸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도록 벌을 세우고 폭행하는 등 가해행위를 하였다. 2021. ○. ○. 피진정기관 학폭위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8호에 의

하여 피해자를 ○○중학교로 강제전학 조치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진정인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및 전학업무 처리지침 등에 근거하여 2021. ○. ○. 피해자를 ○○중학교에서 ○○ ○○군 소재 ○○중학교로 전학조치하였다.

나. ○○○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지속적인 신체폭력으로 인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광역시 ○구로 이사한 후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를 이유로 현재까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다. 현재 피해자의 ○○중학교 통학상황(주거지에서 약 25km)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포털 길찾기	실제 현장방문 시 통학거리
<p><○번 버스로 등교 시 1시간 14분 소요> 1. 거주지 → 버스정류장(도보 11분) 2. 버스정류장 → ○정류장(1시간 1분) 3. 하차 후 → ○○○○중학교(도보 4분)</p>	<p><○번 버스로 등교 시 1시간 21분 소요> 1. 거주지 → 버스정류장(도보 11분) 2. 버스정류장 → ○정류장(1시간 5분) 3. 하차 후 → ○○○○중학교(도보 5분)</p>
<p><하교 시 1시간 18분 소요> 통학시간은 최소 1시간 18분에서 1시간 48분 정도 소요되나, 최소시간으로 하교하려면 최소 2회 이상 환승하여야 함.</p>	<p><○번 버스로 하교 시 1시간 38분 소요> 1. ○○○○중학교 → ○정류장(도보 5분) 2. ○정류장 → ○차고지 입구 (47분) 3. ○차고지에서 환승버스 대기(15분) 4. ○차고지 → 버스정류장(20분) 5. 버스정류장 → 거주지(도보 11분)</p>

* 피해자가 등하교 시 주로 이용하는 ○번 버스의 배차간격은 출퇴근 시 25분 정도이며, 다른 이동경로가 확인되기는 하나, 최소 2회이상 환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라. ○○○경찰서는 2021. ○. ○. 피진정기관 학폭위가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하기 전부터 피해자를 비행청소년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다. 피해자는 ○○중학교로 강제전학된 이후 2021. ○. ○. 다른 중학교 학생을 폭행한 사

실이 있으나, 2022. ○. ○. 현재 ○○중학교 생활지도부 교사와 Wee클래스 상담교사 등이 피해자의 학업적응 및 학생들과 원만한 교우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 상담하는 등 생활지도를 하고 있고, 피해자도 현재까지 지각 및 무단결석 없이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피진정기관 전학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전학이 결정된 학생은 현재의 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학교군 또는 타 학교군 소재 중학교와 직선거리가 2.5km이상 되는 학교 중에서 분산 배정(학급정원 3% 범위내 정원 외 배정)하되, 학생이나 학부모의 희망을 고려하지 않으며, 학교폭력에 의한 학교장 추천 전학을 보낸 경력이 있는 학교에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바. 2021. ○. 기준 피해자가 강제전학을 갈 수 있는 학교는 ○○중학교(8.4km)와 ○○중학교(25km)였는데, ○○중학교는 2021. ○. 강제전학 전입이 1건 발생하여 분산배정원칙에 따라 배정 순위에서 제외하였다.

사. 피진정기관의 최근 4년간 강제전학 원거리 학교 배정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년도	요청학교	배정학교	거리	통학시간(편도)	비고	학년도	요청학교	배정학교	거리	통학시간(편도)	비고
2018	○○중	○○중	28km	1시간 31분		2019	○○중	○○중	24km	1시간 26분	
	○○○중	○○중	21km	1시간 8분			○○중	○○중	29km	1시간 17분	
	○○○중	○○중	25km	1시간 15분			○○중	○○중	26km	1시간 13분	
	○○중	○○중	28km	1시간 22분		2020	○○○중	○○중	23km	1시간 19분	
	○○중	○○중	30km	1시간 25분		2021	○○중	○○중	25km	1시간 15분	피해자

5. 판단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

인 인격체이며, 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모든 인간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4. 27.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결정 참조).

대한민국 정부가 가입한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조 제1항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에서는 교육장 등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에 해당하고, 학교폭력 등에 의한 가해학생의 강제전학 조치는 사실상 초·중학생에게 부과되는 최고 수준의 조치이다. 피진정인은 피해학생을 보호할 의무와 함께 가해학생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다.

피해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피진정기관 학폭위의 강제전학 조치 결정 후 피진정인으로부터 2021. ○. ○. 강제전학 처분을 받아, ○○중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중학교는 진정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및 ○○중학교로부터 약 25km에 위치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은 피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였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피해자를 강제전학 조치시킴으로써 피해자와 ○○○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학교폭력예방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정된 피진정기관 전학업무 처리지침을 살펴보면, 전학이 결정된 학생에 대해 현재 재적하고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동일 학교군 또는 타 학교군 소재 중학교와 직선거리가 2.5km이상 되는 학교 중에서 분산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를 두고 있지 않다. 피진정인은 위 지침에 따라 피해자를 주거지와 ○○중학교로부터 약 25km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하였을 뿐이고, 최근 4년간 다른 강제전학 학생에 대해서도 같은 지침과 기준을 적용하였으므로 문제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중학교로 등하교하는 데만 매일 왕복 약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피진정인은 등·하교에 소요되는 시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선도와 재적응에 적합한 학교인지 여부, 2021. ○. 당시 강제전학이 가능한 학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학교를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행정적 문제와 피해자에 대한 선도 및 적응가능성 등을 고려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피해자의 일반적 행

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광역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피해자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4. 26.

위원장 박찬운

위원 이준일

위원 윤석희